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등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

2016년 1월 8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의 별표,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주민등록번호란 등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정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련한 별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 규정 중 별표·별지서식 개정사항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서식	개정사항
1	총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번호 ⇨ 생년월일
2	총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총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총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모범주민표창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년월일)” 란 ⇨ “생년월일” 란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활용 등) ①·② (생략)</p> <p>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활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인사혁신처장</u> ----- -----.</p> <p>④ ----- ----- <u>인사혁신처장</u>----- ----- ----- -----.</p>

###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세출예산</p>	<p>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 ----- ----- ----- <u>행</u> <u>정자치부장관</u>-----</p>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 -----.
----------------------------	-----------------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u>시장은</u>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u>구청장은</u>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칙의 별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사항 개정
-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 조직 및 장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다. 부서 의견제출 사항 반영(단순 오기사항 수정)